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전시참가 기관 및 기업 모집 공고

해양치유, 해양머드&신산업, 해양레저&관광의 실용화산업화 선도를 위하여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참가할 관련 기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1. 박람회 개요

- 가. 명 칭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 나. 주 제 : 해양의 재발전, 머드의 미래가치
- 다. 기 간 : 2022. 7. 16.(토) ~ 8. 15.(월) / (31일간)
- 라. 장 소 :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일원
- 마. 주 최 : 충청남도, 보령시 ※ 후원 : 해양수산부, 대한민국공군, 한국관광공사, 중소벤처기업부
- 바. 주 관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2. 전시참가 기관 및 기업 모집계획

- 가. 운영장소 : 해양머드&신산업관, 해양레저&관광관
- 나. 운영방식 : 전 기간(31일) 참가를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조직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다. 모집규모
 - 1) 국내·외 기관·기업 100개
 - 2) 전시관 면적
 - 해양머드웰니스관 : 2,000㎡(50m×40m)
 - 해양머드&신산업관 : 2,400㎡(60m×40m)
 - 해양레저&관광관 : 2,400㎡(60m×40m)

라. 운영내용 : 기관 및 기업 전시·홍보

마. 참가비용

구 분	규 격	국내기업 (부가세별도)	해외기업 (부가세포함)	비영리기관 (부가세별도)
기본부스	9㎡(3mx3m)	1,500천원	1,250USD	1,500천원
독립부스	9㎡(3mx3m)	1,000천원	850USD	1,000천원

바. 모집분야

전시관명	전시분야 참가대상(기관, 단체, 법인, 기업 등)	
해양머드 웰니스관	웰니스산업 및 해양치유 등	· 국내외 웰니스산업, 해양 치유 업체/기관 등
해양머드& 신산업관	머드산업존	· 머드 관련 업체/기관, 벤토나이트/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생산 유통업체/기관 등
	그린뉴딜존	· 이차전지, 수소/전기차 업체/기관 등
	해양바이오존	· 해조류 등 해양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기능성 헬스케어 제품 등
	해양치유존	· 해수 및 온천수 이용 해양치유, 산림치유 기타 웰니스 업체/기관 등
	해양에너지존	· 해양수소, 해상풍력발전, 파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분야 신기술 업체/기관 등
	친환경선박존	· 친환경선박, 자율주행선박, 구명 보트, 해양사고 안전장비 업체/기관 등
해양레저 & 관광관	해양레포츠존	· 요트, 모터보트, 각종 해양레포츠 용품 업체/기관 등
	해양레저관광존	· 수상스키, 낚시, 스쿠버 다이빙, 관광 등 업체/기관 등
	캠핑용품	· 카라반, 각종 캠핑용품 업체 등

3. 신청자격

가. 모집분야와 관련된 생산·유통업체 등

나. 모집분야와 관련된 분야의 기관·단체 등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1) 신청접수 : 2022. 4. 12.(화) ~ 2022. 5. 31.(화)

2) 서류심사 : 신청서류 심사 후 최종 참여기업 확정

나. 신청방법

1) 신청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기타 제출 서류 : 인증/허가서 각 1부(제출 필요기업 개별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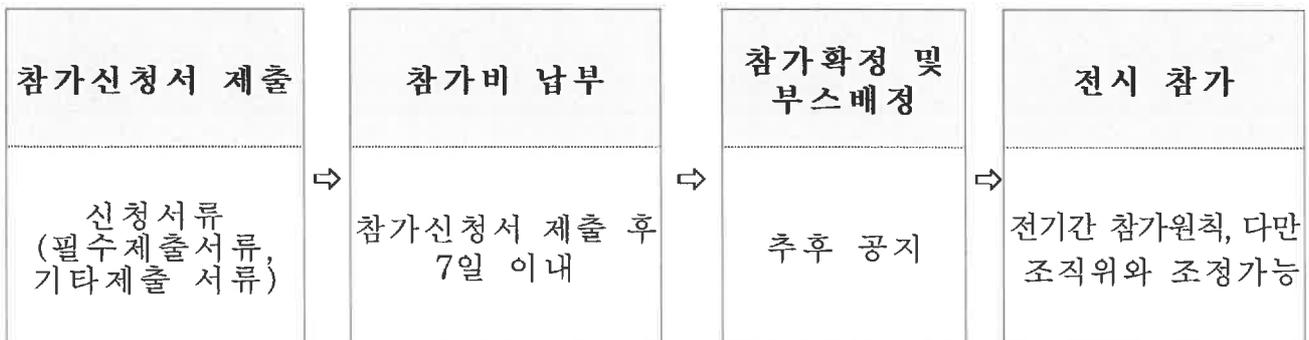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june3771@seamudexpo.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 충남 보령시 대천항로 204, 대천5동행정복지센터 1층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 국제협력부

다. 참가절차



5. 기타 참고사항

- 가. 참가 대상과 자격은 모집분야와 부합되는 업체여야 하며 전시·참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참가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나. 부스규모 및 배정은 전시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다. 참가 확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라. 전시자는 조직위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부스를 전대 또는 양도할 수 없음
- 마. 참가확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조직위의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참가신청서, 전시·참가규정,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국제협력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930-2871)

「붙임」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참가 전시·참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이하 “박람회” 라 한다) 전시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참가자 또는 전시자” 라 함은 박람회 전시참가를 위하여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및 조직위원회” 라 한다)에 전시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국내·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협회 및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② “전시관” 이라 함은 전시품을 전시하는 공간 또는 부스를 말한다.

③ “전시품” 이라 함은 전시관에 전시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④ “전 기간 참가자” 란 박람회 전 기간(31일)을 참여하는 전시자를 말한다.

⑤ “부스” 란 기본부스와 독립부스를 말하며, “기본부스” 는 전시면적(9㎡)과 파티션(측면, 후면), 방염파이텍스, 콘센트 1EA, 스포트라이트 3EA, 형광등 2EA, 상호간판, 안내데스크, 의자 2개, 탁자 1개, 전기 1KW 등을 제공하고, “독립부스” 는 전시면적만 제공하고 부스 설치 및 철거를 전시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한다.

⑥ “대행사” 란 조직위와 계약에 의거 조직위를 대신해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박람회장 내 「해양머드웰니스관」, 「해양머드&신산업관」, 「해양레저&관광관」, 「k-culture관」에 참가하는 국내외 전시자 및 참가자(기업체, 기관, 협회, 지자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참가신청) ① 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별표1〕를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박람회 개최 전 까지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전시관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 계약금(참가비의 50% 이상)을,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전기, 전화, 인터넷 비용 등)는 계약금 납입 후 조직위에 7일 이내까지 납입해야 하고 2022년 3월 31일 이후에는 참가비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박람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기한 내 참가비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참가자는 공공성 및 기여도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지불하고 부대시설(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은 [별표3]과 같이 부담해야 한다.

④ 각 전시관별 참가 독려 및 조기신청 도모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부스비를 일부 할인한다.(계약금 납입일 기준)

1. 20% 할인대상 : '21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참가자

2. 10% 할인대상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참가자

⑤ 참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기관 등에 대하여 자체 선정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조직위는 선정 심의위원회를 내부 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참가비 전액 납입 후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 시 전시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며 참가비 납입 후 14일 이내 일괄수정 발행한다.

⑦ 전시 참가업체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직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귀속된다.

⑧ 조직위원회는 참가신청 접수 이후에도 박람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참가신청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⑨ 참가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의 부담) ① 참가비는 전시장 임대료와 부스 사용료로 나누어지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참가비를 참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장 임대료는 공간면적임대비, 홍보비, 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이며, 부스사용료는 조직위원회에서 설치한 조립부스 사용희망자에 한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전시장임대료와 부스사용료는 [별표2] [별표3] 과 같으며, 기본부스의 경우 부스사용료에는 기본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하지만 독립부스의 경우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참가대상 및 참가기간)

① 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시관명	전시분야 참가대상(기관, 단체, 법인, 기업 등)	
해양머드 웰니스관	웰니스산업 및 해양치유 등	· 국내외 웰니스산업, 해양 치유 업체/기관 등
해양머드& 신산업관	머드산업존	· 머드 관련 업체/기관, 벤토나이트/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생산 유통업체/기관 등
	해상풍력존	· 해상풍력 관련 기업/기관/협회 등
	그린뉴딜존	· 이차전지, 수소/전기차, 태양광 업체/기관 등
	해양바이오존	· 해조류 등 해양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수산가공품, 의약외품 화장품, 기능성 헬스케어 제품 등
	해양치유존	· 해수 및 온천수 이용 해양치유, 산림치유 기타 웰니스 업체/기관 등
	해양에너지존	· 해양수소, 해상풍력발전, 파력발전 등 해양에너지 분야 신기술 업체/기관 등
	친환경선박존	· 친환경선박, 자율주행선박, 구명 보트, 해양사고 안전장비 업체/기관 등
해양레저 &관광관	해양레포츠존	· 요트, 모터보트, 각종 해양레포츠 용품 업체/기관 등
	해양레저관광존	· 수상스키, 낚시, 스쿠버 다이빙, 관광 등 업체/기관 등
	캠핑용품	· 카라반, 각종 텐츠 등 각종 캠핑용품 업체 등

② 참가대상 범위는 유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직위는 참가 대상 및 범위를 임의로 제한·확대할 수 있다.

③ 참가 기간은 전 기간(31일)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조직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전시시간은 박람회 개장시간(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을 기본으로 하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위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전시업체 지원) 조직위는 공공성과 박람회 기여도를 고려하여 협찬사, 후원사 등 기업 및 공공기관, 단체 등과 해외 초청 기업·기관·협회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부스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고 일정액의 항공료 및 화물운송료, 체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시구역 배정) ① 조직위원회는 전시구역을 1부스당 9㎡(3m×3m)를 기본단위로 구획하며, 기본부스는 최고 4개 부스까지 신청에 따라 배정하되 독립부스는 전시계획 등에 따라 조직위 결정에 따라 배정하며, 참가취소, 신청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참가자에게 전시면적만을 제공하고, 전시에 필요한 제반장치는 참가자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가자가 조립부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및 대행사에 기본부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스 배정은 참가자의 추첨으로 배정하되, 조직위원회의 전시계획 및 전시관의 전체적인 구성,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과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정을 임의 조정할 수 있으며 조직위와 대행사는 참가 계약자에 대하여 부스배정 초안 및 추첨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며 조직위가 부스 배정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④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전시장 관리) ①대행사는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직위에 확인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전시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업설명회는 조직위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 출품 품목과 전시 컨셉으로 전시 상주 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제품 및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전시물에 관한 부스 관리인력은 상호합의 하에 조직위 및 참가자 여건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다.

③ 조직위 및 대행사는 전시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전시자 귀책사유로 보아 주최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해당 행위의 중지, 반출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요구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전시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품목과 상이한 다른 품목을 전시하는 경우
2. 박람회의 컨셉에 전혀 맞지 않는 제품 및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전시·직매(현장판매 등)하는 경우
3.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 간에 교환하는 경우
4. 전시자 및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행위 및 기타 조직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구분하여 선별하거나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⑤ 전시자는 전시관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조직위나 대행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호객

행위나 고성방가 등의 지나친 소음 등으로 주변 전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할 때에는 주최자 및 대행사는 이벤트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전시자는 사전 동의 없이 전시시설 내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손상시에는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와 조직위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⑦ 전시자는 신청 당시 신청한 전기공급량의 범위 내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 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조직위 및 대행사의 동의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조직위가 과부하에 의한 정전 또는 안전 등의 이유로 불허 시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조직위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철거하여야 한다.

⑧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며 전시자는 당초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직위에게 통보하여 하며 미통보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⑨ 독립부스 참가신청자는 조직위 및 대행사에 독립부스 참가 이력 및 부스 시안을 제공해야 하며 현장 설치 이전에 조직위와 시설 전시 등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⑩ 구조물 및 전시부스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구조해석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며 사전 협의·승인 후 시공해야 된다.

제10조(설치 및 철거) ① 참가자는 박람회 개막일 1일 전까지 참가 신청서에 명시된 전시품을 반입하여 배정된 부스에 진열 완료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철거할 때까지 전시품 및 배정된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지정기일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전시품을 반입 또는 진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시참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 조직위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여도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전시자 및 대행사는 현장에서 전시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등의 반입관리를 수행하고 참가자는 전시 면적 및 시간 내에 반입해야 하며 전시 기간 전일 22시까지 전시를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시자는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후 2일 이내에 모든 전시품과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전시품에 대하여는 조직위원회가 임의로 철거·폐기처분할 수 있다.(단, 조직위 및 대행사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참가신청 취소 및 위약금) ① 참가자가 전시 참가 신청 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조직위원회에 서면으로 참가신청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시참가를 포기한 경우, 위약금은 다음에 정한 상당액을 기 납입한 참가비에서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2022년 4월 30일 이전 참가를 취소할 경우 : 참가비 × 50%

2. 2022년 5월 1일 이후에 참가를 취소할 경우 : 참가비 전액

제12조(박람회의 취소 또는 변경)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이에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불가항력 기타 조직위원회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의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될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조직위원회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화재예방의무) ① 참가자는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를 소방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영업행위) ① 참가자는 전시목적 부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홍보차원의 도·소매, 교환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참가자는 전시관 내 과도한 판매품의 적치, 호객행위 등에 의한 관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즉시 전시를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관계법령 적용) 외국 참가자의 반입물품(전시품)에 대한 통관 및 식물검역은 대한민국 관세법 및 식물방역법을 적용한다.

제17조(통관 및 검역편의 제공) 조직위원회와 대행사는 국외 참가자의 편익을 위하여 사전에 통관 및 검역절차가 수행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운송업체 지정) 조직위원회는 대행사와 협의하여 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외국반입물품을 국내 도착지로부터 박람회장까지 효율적으로 책임 수송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보충규정) ① 조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는 조직위원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분쟁의 해결) 참가자와 조직위원회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22조(청렴계약) 조직위원회와 참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준수의 의무) 참가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신청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전시 참가신청서

1. 참가기업 정보

업 체 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사 업 형 태	<input type="checkbox"/> 제조/생산 <input type="checkbox"/> 유통업 <input type="checkbox"/> 무역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	홈페이지
수 출 여 부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수출품목
수출여부		수출국가
전 시 담 당 자	성 명	유 선 전 화
	직 위	휴 대 전 화
		부 서
		이 메 일

2. 전시품목 정보 *전시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출품 불가(참가규정 참고)

품 목 분 류	<input type="checkbox"/> 머드관련 제품 <input type="checkbox"/> 해양 신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해양바이오·제약 <input type="checkbox"/> 머드 및 해양관련 화장품, 뷰티 용품			
	<input type="checkbox"/> 해양 레저 캠핑 <input type="checkbox"/> 헬스케어 <input type="checkbox"/> 해양, 웰니스 등 기타 <input type="checkbox"/> 수산가공품 등			
출 품 품 목 (소 개)	품목	규격	판매가격	비고
	* 품목이 많을 경우 서식으로 별지 작성			
□ 해외바이어 상담 신청	희망국가 :	바이어명(회사명) :		
	상담품목 :	바이어 연락처 :		

3. 부스신청 및 참가비 *아래 선택사항 중, 참가를 희망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 구 분	<input type="checkbox"/> B2B(홍보 및 수출 상담회 참가) <input type="checkbox"/> B2C(홍보 및 판매 위주 단회차 또는 중 전기간 신청가능)				
참 가 기 간	<input type="checkbox"/> 전기간(7.16 ~ 8.15) 31일 <input type="checkbox"/> 단기간(<input type="checkbox"/> 1차:7.16~7.24, <input type="checkbox"/> 2차:7.25~7.31, <input type="checkbox"/> 3차:8.1~8.7, <input type="checkbox"/> 4차:8.8~8.15.)				
구 분	규 격	단 가	신 청 수 량	합 계	비 고
부 스 (필수) ①	<input type="checkbox"/> 기본	9m(3x3m)	1,500,000원	부스	원 *전시면적 및 기본장치 제공
	<input type="checkbox"/> 독립	9m(3x3m)	1,000,000원	부스	원 *전시면적(바닥)만 제공
온라인 프로그램 (선택) * 참가비 무료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홍보관(홈페이지 상 기업/제품 홍보)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수출 상담회 * 부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참가기회가 제공됩니다. 단,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 (선택) ②	<input type="checkbox"/> 전기	1KW당	<input type="checkbox"/> 주 간 : 58,000원 <input type="checkbox"/> 24시간 : 139,000원	<input type="checkbox"/> 단상(KW) <input type="checkbox"/> 삼상(KW)	원 *단상(220V), 삼상(380V) * 기본부스 1kw 기본제공
	<input type="checkbox"/> 전화	1회선	60,000원	회선	원 국내통화 전용, 해외통화 불가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1회선	70,000원	회선	원 인터넷사용료 포함
할인 내역 ③	<input type="checkbox"/> 20%	'21. 12. 31. 까지 신청한 전시자			원 부스(①) 합계액의 20%
	<input type="checkbox"/> 10%	'22. 1. 1. ~ 3. 31. 까지 신청한 전시자			원 부스(①) 합계액의 10%
<입금계좌> 농협 301-0299-9189-81/ (예금주: 재단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소 계 (① + ② - ③)			원	부가가치세(VAT) 별도
	부 가 가 치 세			원	소계의 10%
	합 계			원	

- * 상기 신청내역(참가기간 및 부스규모)은 최종 참가 심사 및 확정 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이메일 june3771@seamudexpo.or.kr / 팩스 041-930-2891 / 우편접수 / 방문접수
-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허가서 등 사본 1부
- * 참가비 납부 : 계약금은 신청후 7일 이내 부스비의 50% 입금, 잔금 및 부대시설 이용료는 참가자 선정 후 7일 이내까지 납입 '22년 5월 31일 이후 신청서 참가비 전액 납입(기업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
- * 문의처 : 조직위원회 국제협력부 ☎ 041-930-2871

본사는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담당자(전시담당자)

(인)

대표자

(인)

재단법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귀중

[별표2] 참가비

참가비는 한 개의 부스당 임차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의미하고, 부스 규격 및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참가 기간에 따른 부스 가격의 차등은 없다.

구 분	규 격	국내기업 (부가세별도)	해외기업 (부가세포함)	비영리기관 (부가세별도)
기본부스	9㎡(3mx3m)	1,500천원	1,250USD	1,500천원
독립부스	9㎡(3mx3m)	1,000천원	850USD	1,000천원

[별표3] 부대시설 사용료

① 기본부스·독립부스 전기 요금은 1kW당 주간 58천원, 24시간 139천원으로 한다. 단, 기본부스에 한하여 1kW까지 무상 제공한다.

※ 삼상(380V)전기 배선 공사(분전반-부스)는 사용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조직위원회 사전협의)

② 전화는 1회선은 60천원, 인터넷은 1회선당 70천원으로 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기타 실비가 소요되는 부문에서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하되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안)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에서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담당부서
-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행사대행업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참가업체 선정평가, 박람회 준비 안내 및 운영, 박람회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업체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주소, 주요생산물
- 개인(담당자) : 성명, 부서명, 직위, 휴대폰번호, E-mail주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 박람회 참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박람회 종료일 이후 5년까지
- 행사대행 위탁업체 : 박람회 참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박람회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선정평가, 박람회 준비 및 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